

#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51,337,152	49,540,115
일반회계	1,466,441,192	43,993,236
특별회계	184,895,960	5,546,879
공기업특별회계	163,947,988	4,918,44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873,179	1,376,19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489,584	1,454,68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9,585,225	2,087,557
기타특별회계	20,947,972	628,4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50,436	13,51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437,973	223,13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70,877	128,126
수질개선특별회계	7,985,672	239,57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803,014	24,09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271,76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1,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